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 이를 연장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7호, 2023. 5. 16. 공포, 2023. 1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구체적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입법예고(2023. 10. 6. ~ 10.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1조제3항”을 각각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존속기한의 9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존속 여부 점검 등) ① <u>법 제11조제3항</u> 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 위원회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존속 여부 점검 등) ① <u>법 제11조제5항</u>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11조제3항</u> 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 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u>법 제11조제5항</u>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u>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존속기한의 9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u>

<신 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라 협의된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7